
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b>폐수배출시설 설치</b>                  [ ] 허가증                  [ ] 신고증명서             </div> </div>				
제 호					
① 사업장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③ 대표자					
④ 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: )				
⑤ 사업종류	(분류번호 )	⑥ 종류	종		
⑦ 폐수배출시설 일일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	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가동일				
⑨ 폐수배출요인명세					
원료명	사용량	생산제품명	생산량		
허가 또는 신고 사항	⑩ 폐수배출공정흐름도: 따로 붙임				
	⑪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				
	폐수배출시설명	폐수배출량	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	폐수처리방법	폐수처리능력
⑫ 폐수처리계통도: 따로 붙임					
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조건					
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(사업장 부지면적 m <sup>2</sup> )		[ ] 해당 [ ] 해당없음 ※ 해당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 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.			
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[ ]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[ ]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 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직인	

